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8. 2. 4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통장연합회 임원 및 전통장의 건의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폐지 제안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·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11. 23 ~ 12. 13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